

호텔롯데 부패방지방침

주식회사 호텔롯데(이하 '회사' 라 한다)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.

제 1조(목적)

이 방침은 회사의 대표이사, 임직원, 이사회 및 파트너사 임직원 모두(이하'임직원 등')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하여 행동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윤리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.

제 2조(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)

회사는 임직원 등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접대,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, 회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부정사용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행위 등 기타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.

제 3조(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)

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)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, 2)해외 지사가 설치된 곳의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, 1)과 2)간의 법령 불일치가 발생할 때 보다 높은 기준을 따른다.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.

제 4조(부패방지 방침 준수 서약)

임직원 등은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며,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.

제 5조(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)

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,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 모든 임직원 등은 년 1회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한다.

제 6조(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)

회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부 별 부패방지책임자를 위촉하여 선임하고,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, 회사의 부패방지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·감독할 의무가 있다.

제 7조(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)

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제보자가 임직원 등일 경우,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,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

제 8조(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준수시 조치)

회사는 임직원 등이 이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9조(방침의 적용 및 변경)

이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추가·삭제·정정 등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.